

16. 昇降機教育機關指定 및 教育實施要領

통상산업부고시제 1997-195호.11.28 1997.11.28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승강기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①법 제16조의2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의 보고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

고 교육을 실시한 경우

2. 교육내용·절차 및 방법 등이 법령과 이 요령을 위반하여 교육업무에 문제를 초래하거나 민원 등의 발생으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3. 통상산업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3조(교육전문인력) ①교육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한 교육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강의와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등 교육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임강사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이 그 요건을 구비하여 교육강사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공계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전기·전자·기계 또는 산업안전분야의 기사 1급이상의 자격자

2. 전문대학의 기계·전자 또는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전기·전자·기계 또는 산업안전분야의 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기타 교육과정에 적합한 전임강사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상응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격 또는 실무경력이 있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4조(교육과정) 법 제16조의2제4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검사자교육
2.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
3. 법 제17조 및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자체검사자교육 및 동 교육 이수자에 대한 승강기자체검사자보수교육
4. 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실무기술인력교육

제5조(교육대상자 및 과목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주기는 별표2와 같으며, 각 교육과정별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기간은 별

표3과 같다.

제6조(교육계획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15일까지 차기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별 월별 및 연간 교육예산인원
2. 월별 교육일정·교육장소 및 수용인원(다만, 교육장소별로 1회 수용인원은 1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과정별 교육교재 및 강사진
4. 교육과정별 교육비 및 그 산출근거
5.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재교육실시 여부 및 그 시행방법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중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이 불합리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결과 보고)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종료 익월 20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인력등 교육결과자료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과정별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에 상인원 대비 교육참석 인원
2. 각 과정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강사
3. 기타 교육성과 또는 교육에 관한 건의사항 등

제8조(교육의 신청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육수강신청서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가 당해 교

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수료증)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연도에 실시되는 교육에 대하여는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 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고시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승강기교육기관지정(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02호, '93. 3. 8 및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81호, '93. 8. 3)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에 대한 조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검사인력은 지정일로부터 6월 이내 이 요령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승강기검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전에 승강기검사요원교육 및 승강기자체검사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요령 시행전에 승강기실무기술인력 교육을 받은 자는 이 요령 제4조제4호에서 규정한 승강기실무기술인력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요령 시행전에 승강기운행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는 이 요령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승강기 교육과정별 교육기관

교육 과정	관련 규정	교육 기관
승강기검사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5조 ◦ 요령 제4조제1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관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6조의2제3항 ◦ 요령 제4조제2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자체검사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7조 및 규칙 제19조 ◦ 요령 제4조제3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자체검사자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령 제4조제3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실무기술인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제5조 및 제12조 ◦ 요령 제4조제4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